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택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4조에 의거 제2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당사 정관 제24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년 03월 29일(금) 오전 9시 00분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31번지 섬유센터빌딩 17층 중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21기(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별첨1. 정관변경안)
-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장대용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규정 일부 변경의 건(*별첨2. 신·구조문 대조표)
-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 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
- 간접 행사: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법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법인인감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2019년 03월 14일

주식회사 브레인콘텐츠
대표이사 장 대 용
명의개서 대리인 하나은행증권대행부

직인
생략

*** 정관변경 신규대조표 ***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p>제2조 【목 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4.(내용생략) 6.~106.(내용생략)</p> <p>5. 부동산 취득개발 및 임대사업 (변경전)</p>	<p>제2조 【목 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4.(현행과 동일) 6.~106.(현행과 동일)</p> <p>5. 부동산 투자, 개발, 건설 및 매매, 분양, 회원모집, 임대업, 관리운영, 위탁관리 운영업 (변경후)</p>	<p>사업목적 변경</p>
<p>제8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p> <p>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 주식으로 한다.</p> <p>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p> <p>③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에 관한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p>	<p>제8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및 권리의 전자등록】</p> <p>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 주식으로 한다.</p> <p>②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p> <p>③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에 관한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p>	<p>전자등록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근거 신설</p>
<p>제13조 【명의개서대리인】</p> <p>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p> <p>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p> <p>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u>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u></p> <p>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p>	<p>제13조 【명의개서대리인】</p> <p>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p> <p>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p> <p>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u>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u></p> <p>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p>	<p>전자등록에 따른 주식 사무처리 변경</p>
<p>제14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p> <p>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전자등록에 따른 관련 내용삭제</p>
<p>제15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p> <p>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p> <p>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p> <p>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p> <p>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p> <p>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p> <p>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기간을 의미하는 경우 개월로 표현을 수정 (표준정관 반영)</p> <p>조문번호 변경</p>
<p>제16조 ~ 제19조 (이하동일)</p>	<p>제15조~제18조 (이하동일)</p>	<p>조문번호변경</p>
<p>(신설)</p>	<p>제19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p>	<p>전자등록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근거 신설</p>

<p>제20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정관 제13조(명의개서대리인) 및 정관 제14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20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정관 제13조(명의개서대리인)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14조 삭제에 따른 문구 정비</p>
<p>제22조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p>	<p>제22조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p>	<p>표준정관 반영</p>
<p>제23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8조(이사의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3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대표이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직위명 예시를 삭제</p>
<p>제26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8조(이사의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6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8조(이사의직무)의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4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p>	<p>제34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p>	<p>사외이사 결원 시 상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문구 신설</p>
<p>제38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8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p>
<p>제41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41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p>	<p>이사회 의장 관련 내용 반영 (표준정관 반영)</p>
<p>제46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 관련 법률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p>	<p>제46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 관련 법률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으로 인한 결원시 상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문구 신설 (표준정관 반영)</p>
<p>제51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본 회사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p>	<p>제51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본 회사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p>	<p>대표이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직위명 예시를 삭제</p>

<p>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 재무제표를 포함한다.</p> <p>③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⑥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 제1항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p> <p>⑧ 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⑨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7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 재무제표를 포함한다.</p> <p>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 제1항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p> <p>⑧ 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⑨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7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52조 【외부감사인의 선임】</p> <p>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 한다.</p>	<p>제52조 【외부감사인의 선임】</p> <p>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표준정관 반영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22차 개정 : 2019년 03월 29일</p> <p>이 정관은 제2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3조, 제19조 및 제20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p>	개정일 및 시행일 명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신·구조문 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사유
<p>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브레인콘텐츠(이하 ‘회사’라고 한다.) 정관 제 39조 2항에 의한 임원의 퇴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브레인콘텐츠(이하 ‘회사’라고 한다.) 정관 제 40조 2항에 의한 임원의 퇴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인용조문 번호변경</p>
<p>제 2조 【임원의 정의】 이 규정은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회사에서 선임된 이사 이상의 비등기 임원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등기 임원을 말한다.</p>	<p>제 2조 【임원의 정의】 左同</p>	<p>-</p>
<p>제3조 【지급 사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항에서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임기만료 퇴임 2. 사임 3. 재임 중 사망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하는 경우</p>	<p>제3조 【지급 사유】 ① 회사는 1년 이상 재임한 임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재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하는 경우 2. 재임 중 사망한 경우</p>	<p><전문개정></p>
<p>제4조 【퇴직급여의 계산】 1. 퇴직급여의 산정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재임연수*기준 지급률]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상기 1항의 기준지급률은 아래 각 호와 같다. (소득세법 22조)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3,4항) ① 회 장 : 3.0배수 ② 부 회 장 : 2.5배수 ③ 총괄대표 : 2.0배수 ④ 대표이사 : 1.6배수 ⑤ 부 사 장 : 1.5배수 ⑥ 전무이사 : 1.3배수 ⑦ 상무이사 : 1.2배수 ⑧ 이사, 감사, 기타 임원에 준하는 자 : 1.1배수 3. 재임연수가 1년 미만이라도 기준 지급률을 적용한다. 이때, 재임연수는 제 5조를 따른다. 4. 해외 근무 중 퇴직한 경우에는 국내 근무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p>	<p>제4조 【퇴직급여의 계산】 ① 퇴직급여의 산정은 [연간보수총액 * 1/12 * 근속개월수 /12 * 지급률]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 1항의 기준지급률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회 장 : 3.0배수 2. 부 회 장 : 2.5배수 3. 총괄대표 : 2.5배수 4. 대표이사 : 2.0배수 5. 수석부사장:1.6배수 6. 부 사 장 : 1.5배수 7. 전무이사 : 1.3배수 8. 상무이사 : 1.2배수 9. 이사, 감사, 기타 임원에 준하는 자 : 1.1배수 ③ 제3조 2항에 따라 재임기간 1년 미만인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준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해외근무 중 퇴직한 경우에는 국내 근무기준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p>	<p><전문개정></p>
<p>제5조 【재임연수의 계산】 1. 근속개월수의 산정은 선임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2.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3.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월할 계산한다. <삭제> 4. 재임 중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5. 재임 중 휴직 및 무보수 재임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신설)</p>	<p>제5조 【재임연수의 계산】 ① 근속개월수의 산정은 선임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②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③ 재임 중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④ 재임 중 휴직 및 무보수 재임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p>	<p><3호삭제></p>
<p>(신설)</p>	<p>제6조 【퇴직연금의 가입과 불입】 ① 회사는 1년 이상 재임한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1항에 의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원에게 본규정 4조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매월 또는 1년에 1회이상 해당 임원퇴직연금 계좌 또는 회사의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다.</p>	<p><조문신설></p>
<p>(신설)</p>	<p>제7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① 회사는 1년 이상 재임한 임원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에 해당 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여 지급 할 수 있다. ②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은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받은 익일부터 퇴직일 까지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p>	<p><조문신설></p>

<p>제6조 【연임 임원에 대한 계산】 임원이 연임(連任)된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기간을 합산하여 제3조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임원의 직급은 퇴임 시의 최종 직급을 기준으로 한다.</p>	<p>제8조 【연임 임원에 대한 계산】</p> <p>左同</p>	<p><조문번호 변경></p>
<p>제7조 【해임의 경우】</p> <p>1. 등기임원(사용자 지위, 상법상 임원)의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 판결을 받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퇴직금을 감액지급 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2. 위 1항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제9조 【퇴직금의 지급제한】</p> <p>① 비상근 임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② 등기임원(사용자 지위, 상법상 임원)의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 판결을 받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퇴직금을 감액지급 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회사는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실을 초래하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면, 면직요구, 해임권고 또는 징계면직 상당의 결정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감액지급 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p>
<p>제8조 【관계회사로의 전입】</p> <p>1. 임원이 관계회사로의 임원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p> <p>2. 전항의 경우, 임원의 퇴직금은 최후로 재입한 회사에서의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에 각 회사에서의 직급별 퇴직금 지급률과 재입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p>	<p>제10조 【관계회사로의 전입】</p> <p>① 임원이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로 전입, 전출되는 경우 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전출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전입 회사는 전입회사의 전입일부터 퇴직일까지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 한다.</p> <p>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분할 등의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졌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입 회사의 규정에 따라 재입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p> <p>③ 관계회사에서 1년이상 재입한 후 전입한 임원이 본조 1항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입회사의 재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제 4조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전문개정></p>
<p>제9조 【퇴직금 지급의 특례】</p> <p>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순직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전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급률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 기준지급률의 50% 이내</p> <p>② 순직으로 퇴직한 자 : 기준지급률의 100%이내</p> <p>2.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실을 초래하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면, 면직요구, 해임권고 또는 징계면직 상당의 결정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감액지급 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분조이기></p>	<p>제11조 【퇴직금 지급의 특례】</p> <p>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순직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급률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 기준지급률의 100%이내</p> <p>2. 순직으로 퇴직한 자 : 기준지급률의 300%이내</p>	<p><조문번호 변경, 전문개정></p>
<p>제10조 【퇴직 위로금】</p> <p>1. 퇴직하는 임원으로서 재입기간 중 회사에 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를 얻어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2. 위 1항의 퇴직위로금은 퇴직금 지급규정과 별도로 현금 또는 현금 이외의 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제12조 【퇴직 위로금】</p> <p>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임원에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1년 미만 근속하고 퇴직하는 임원</p> <p>2. 임기 만료전 명예퇴직하는 임원</p> <p>3. 재입기간 중 무보수로 재입한 임원</p> <p>4. 재입기간중 공적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에 따라 이사회가 퇴직위로금 지급을 결의한 경우</p> <p>② 위 1항의 퇴직위로금은 퇴직금 지급규정과 별도로 현금 또는 현금 이외의 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조문번호 변경, 전문개정></p>

<p>제11조 【유족위로금 및 보상금의 지급】</p> <p>1. 회사는 임원이 재직하는 동안 사망, 장애 또는 질병 발생 시 당해 임원의 유족 또는 본인에게 위로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2. 임원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계약 또는 상해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사망 등 보험 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제세 공과금 등 비용 제외)은 당해 유족 또는 본인에게 지급한다.</p> <p>3. 퇴직위로금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으로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당해 보험을 해지(해약)하지 않고 퇴직 임원에게 승계하여 퇴직위로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제13조 【유족위로금 및 보상금의 지급】</p> <p>左同</p>	<p><조문번호 변경></p>
<p>제12조 【퇴직금 등의 지급 및 수령권자】</p> <p>1. 퇴직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한 자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외 회사의 자산(재고 자산, 유가증권, 고정자산, 보험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2. 퇴직금 등의 수령권자는 퇴직자이며,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민법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르는 유족으로 한다.</p> <p>3. 퇴직금을 유족이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4. 유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 퇴직자의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분묘 기념비설치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p>	<p>제14조 【퇴직금 등의 지급 및 수령권자】</p> <p>左同</p>	<p><조문번호 변경></p>
<p>제13조 【규정개폐】</p> <p>이 규정의 개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p>	<p>제15조 【규정개폐】</p> <p>左同</p>	<p><조문번호 변경></p>
<p>부 칙</p> <p>제1조 【시행일】</p> <p>1. 이 규정은 2017년 03월 30일부로 시행한다.</p>	<p>부 칙</p> <p>제1조 【시행일】</p> <p>1. 이 규정은 2019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본 규정 전의 퇴직금 계산은 본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p>	<p><시행일 명시></p>

이사선임의 건

가. 이사 후보자 관련사항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요약력	최대주주와의관계	추천인	비고
사내이사	장대용	750115	3년	現)㈜브레인콘텐츠 대표이사 前)㈜리치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前)㈜KT뮤직(구, 뮤직시티) 前)㈜씨즈미디어	없음	이사회	재선임